##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8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오기형・복기왕・박수현

정진욱 • 부승찬 • 김남근

조계원 • 윤건영 • 이광희

정성호 • 박희승 • 양부남

이병진 · 송재봉 · 위성락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 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는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 ④ (생 략)	제15조(고발) ① ~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는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u>수 있다.</u>